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 탐색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1.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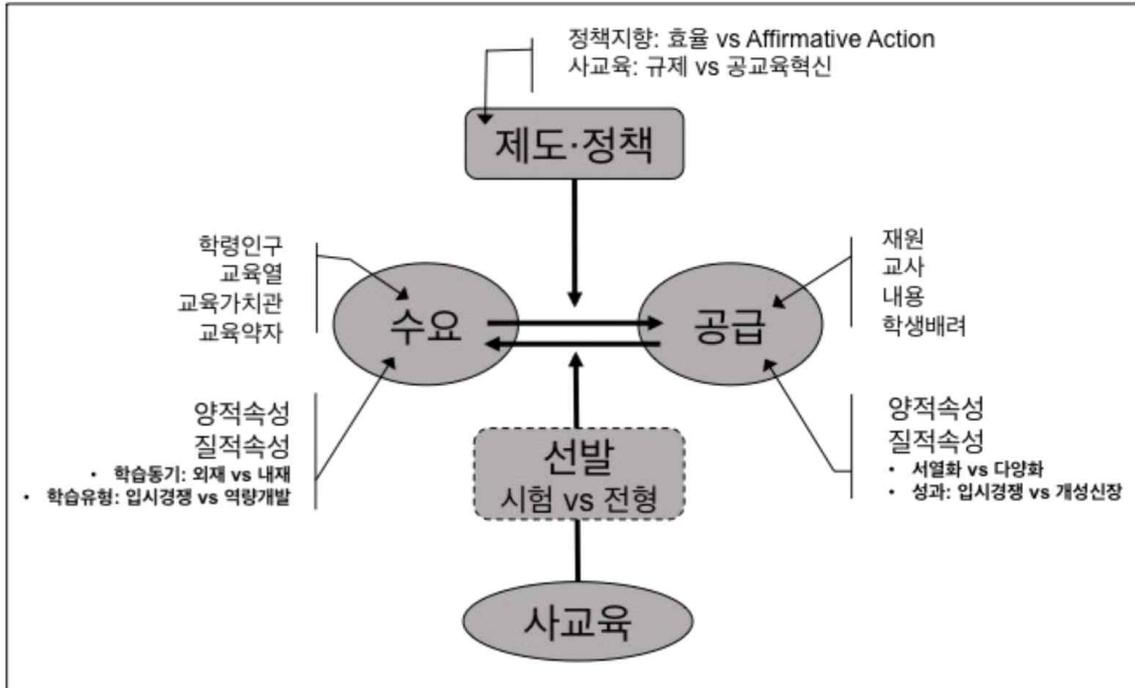
- 김정래(2004)는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를 최소(minimal) 기회균등, 전형적(conventional) 기회균등, 급진적(radical) 기회균등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한 일이 있다.
- 최소 기회균등은 기회균등의 형식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이유로 취업과 취학 등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은 것, 또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 전형적 기회균등은 형식적 수준의 기회균등을 넘어서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도록 각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Dworkin은 환경의 영향은 받지 않고(endowment-insensitive)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ambition-sensitive) 원리라고 표현하였다.
- 급진적 기회균등은 기회균등의 원리가 사회적 불리함(social disadvantage)을 극복하려 해도 자연적이고 태생적 불리함(natural or inborn disadvantage)을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정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소수집단우선지원정책(affirmative action)이 그 예이다.

2. 교육기회 균등 이념의 변화

- 제헌 헌법 제1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조문을 두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루어진 제5차 헌법 개정 당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로 수정하였다. 이후 개정 조문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 헌법 제정 과정, 그리고 교육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라는 어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70년대 말 전까지 ‘능력에 따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 아동과 여성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패막이와도 같은 것이었다.
- 그런데,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을 계기로 ‘능력에 따라’는 학업 성취가 우수하거나 가정의 경제력 등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육 요구를 정당화하는 일, 즉 자신들과는 형편이 다른 집단들과의 교육을 차별화하는 일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평등 지향적 교육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 특히, 과외 금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후에는 가정의 경제적 영향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신전속적 능력과 비전속적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 타고난 능력과 가정의 경제력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된 능력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버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상정한 능력’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능력’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상정한 능력’은 공허해져 버린다. 대신 가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능력이 일신전속적 능력과 동일시되고, 이것이 공정성 담론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가 접합되었다(김용, 2023).
- 이처럼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주의 또는 업적주의(meritocracy)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오히려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시각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2018년 개헌 논의 당시 이와 같은 주장이 분출하였으며, 제헌 헌법과 같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근래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이나 양극화라는 사회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기회 균등 현상의 분석 모형과 전망

- 2015년 이종재 교수는 교육기회 균등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그림 1]을 제안한 일이 있다.



[그림 1] 교육기회 균등 정책 분석 모형 (이종재, 2015)

- 모형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기회 균등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 수요 요인으로는 학령인구, 교육열, 교육가치관, 교육약자 등을 들 수 있고, 공급 요인으로는 재원, 교사, 내용, 학생 배려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모두 양적 속성과 질적 속성을 가지는데, 예컨대, 학령 인구가 많으면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양적 속성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는 별개로 학업 흥미가 높거나 낮다는 사실은 질적 속성을 나타낸다.
- 아울러, 선발과 사교육, 그리고 정책적 대응이 교육기회 균등에서 중요하다. 근래 제기되는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며, 상이한 공정성 문제 또는 교육기회 균등을 제기한다. 어떤 선발 정책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교육기회 균등 현상은 달라진다.
- 위의 분석 모형과 관련하여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두고 싶다.

- 첫째,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경쟁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전망과 다른 현실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국사회는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홍성국, 2019; 2023). 수축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을 위한 생존 경쟁이 한결 치열해진다. 팽창사회에서는 비록 학령인구가 급증하더라도 경쟁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수축사회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쟁 압력은 높아진다. 교육열은 여전할 것이며, 교육가치관 면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둘째, 공급 면에서 기회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교육만으로 한정할 때의 이야기다. 수요와도 관련된 주제이지만, 과거에는 교육기회 균등 논의가 학령기 아동을 상정하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 우리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 인구의 급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미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으로, 특히 노인교육의 관점에서 공급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교육기회 균등 논의의 관점과 주제를 일신할 것을 요구한다.
- 공급 면에서 제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과제는 아이들의 변화와 관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전제로 하여 학교교육의 과제를 지식교육으로 좁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관계의 위기’ 또는 ‘정체성 확립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돌봄으로서의 교육(education as caring)에 관하여 깊이 검토하고 새로운 학교교육 제도를 수립할 시점이다.
- 셋째, 사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사사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6일제 수업은 주5일제로 바뀌었고, 학교 교육활동 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학교에서 경험한 활동 중 상당수는 ‘교사 잡무’로 인식되면서 사라졌다. 요즘 아이들은 스카우트 활동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더 늘어난 학교 밖의 시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상당 부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사교육 영향은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기회 균등 면에서 주목할만한 위험 요인이다.

4. 디지털 기술 교육 적용의 양면성

-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양면이 존재한다.
- 기대는 광범하게 퍼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UNESCO는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과 학습자료의 확대는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확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 반면, 디지털 기술의 교육 적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음 기사를 참조해보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보다 적은 시간 활용하는 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며 컴퓨터 활용교육 옹호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31개 나라 15살 학생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비교평가한 조사(PISA2012)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였다. 교실에서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이 적은 국가일수록 학생들의 성취가 뛰어났는데, 한국(9분), 중국(상하이 10분, 홍콩 11분), 일본(13분) 등이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프랑스의 민간 교육단체 리부트재단이 2015년 피사 데이터를 분석해 2019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2012년 피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태블릿피사 사용이 독해력 학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였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 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미국의 서버번 볼티모어 카운티는 2014년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종이교과서를 대체했는데 시험성적이 떨어지고 학부모 우려가 커져 기기 보급을 애초의 5분의1로 축소했다(구본권, 2020.2.10.).
- 지난해 10월 취임한 로타 에드홀름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대거 활용하는 걸 강하게 비판하며, 종이책 사용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한 국립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살 이하 아동 교육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학교의 종이책 구입 예산으로 6억8500만크로나(약 823억원)를 책정했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해한다는 유명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발표 덕분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가 학습을 방해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초점은 다시 인쇄된 교과서를 통한 지식 습득과 교사의 전문 지식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육이 교사들이 지도하는 대면 교육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실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전통적인 교육 방법 옹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제교육성과평가협회(IEA)의 읽기 능력 테스트에서 스웨덴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지난 2016년 555점(500점이 중앙 기준점)을 얻었으나 2021년에는 544점으로 11점이 떨어졌다. 2021년 점수는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 잉글랜드, 핀란드 등에 이은 공동 7위의 우수한 점수지만, 스웨덴은 점수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신기섭, 2023.9.11.).

- 스웨덴 교육부의 디지털 기기 비판을 정치 이념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내시 대학의 닐 셀윈 교수(교육학)는 기술의 영향을 비판하는 건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움직임”이라며 “이는 전통적인 가치에 헌신한다는 걸 보여주기엔 깔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신기섭, 2023.9.11.).
- 문해력 강화를 위한 ‘종이 소환’은 스웨덴만의 일이 아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새 학년을 맞은 이달부터 ‘필기체 쓰기’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 교육과정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단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돕는다는 학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필기체 쓰기 수업은 2006년 선택 과목으로 강등됐다가 17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온타리오주 교육 당국은 “필기체 쓰기 수업은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필기가 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도 분명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일부 국가는 디지털 기기가 교실에 있기만 해도 수업에 방해된다고 학교 밖으로 퇴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은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핀란드는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네덜란드도 수업 중 방해 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실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시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지만 교실의 일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스마트폰을 금지해)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 저연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는 한국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준영 보라매병원 신경정신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집중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책을 통한 학습이 아이들의 상상력 고취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기기를 쓰더라도 일정 비중은 책을 통해 학습하는 방향으로 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성호, 2023.9.22.).

5. “디지털 시대 교육”의 검토 과제

- 흔히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고 하면 ① 디지털 접근(access)의 격차, ② 디지털 이용(use)의 격차, ③ 디지털 이용 결과의 격차를 의미한다(김주현, 2022). 비슷한 배경 위에서 ‘디지털 시대 교육’을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① 학습자의 디지털 기기 접근 과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기기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집단이 존재하는가?
- ②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할 때, 그 과정은 모든 집단에 독립적인 것인가?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친화적이지만 다른 학습자들에게는 비친화적인 과정인가?
- ③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결과에 격차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 격차를 보정할 것인가?

- 위의 세 가지 검토 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④ 디지털 교육이 일반화하면 학습자의 속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기회균등은 동 시대 집단 간 차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한 세대 인간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디지털 교육과 비디지털 교육의 관계 또는 상호 연계 과정은 모든 집단에 독립적인가?

- ‘교육 = 디지털 교육’, 즉 모든 교육이 디지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비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교육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즉, 디지털 교육이 교육의 일부가 되는 방식, 다시 말하여 비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교육이 결합하여 전체로서의 교육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 경우 디지털 교육과 비디지털 교육의 결합 국면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 현상은 집단 독립적인가 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 각각의 문제를 간략히 검토한다.

① 코로나 19 시기에 원격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교부금이 넉넉하던 시기에 모든 학생에게 단말기를 지급하는 정책(예: 서울시교육청 디벳) 등으로 기기 접근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②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의 집단 독립성 문제. 기존에는 교육기회의 균

등을 ‘집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선전되고 있다. ‘집단 중립성’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 외에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컨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하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만, 비장애 학생들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정책 과제가 된다.

-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이 집단 또는 개인 중립적이지 않다면,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과 전통적 또는 비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완전학습’을 실현하고, 교육결과의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개인 맞춤형 교육이 오히려 학습자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인공 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기는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데 학습자의 수준과 상호작용의 수준이 비례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모든 학습자가 최소한, 또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디지털 교육과 학습자 속성 문제. 디지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방식은 물론 의식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문화기술이다. 독일에서는 ‘디지털성(Digitalität)’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 학습자 속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이주호, 2023).

- 이 개념을 주창한 슈탈더(F. Stalder)는 오늘날 개인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자신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발현할만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디지털 기술 자체에 자발적으로 종속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술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기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Bildung)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고도 말한다.

⑤ 디지털 기반 교육과 전통적 또는 비디지털 교육의 결합 차원에서 문제를 논해야 한다. 디지털교육만으로 분석과 논의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6. 관련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학교 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7. 몇 가지 입법 제안

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 원격교육 취약자가 반드시 '계층'이 아닐 수도 있다. 개인 단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현행 조문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추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 조문은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체 학습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학습자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반 학습과 전통적 학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권(2020.2.10.). 디지털 시대 교육 최고 과제는? “주의력 잃지 않는 힘”. 한겨레신문.
- 김용(2023). 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의 접합 - 헌법상 ‘능력에 따라’의 해석 전환과 교육기본권의 왜곡 - . 교육정치학연구 30(3), 1-25.
- 김주현(2022). 디지털 시대의 평등권. 법과 사회 71. 255-282.
- 신기섭(2023.9.11.). 우파정부 들어선 스웨덴, 디지털 교육서 종이책 강조로 선회. 한겨레신문.
- 이종재(2015). 한국교육의 발전 단계와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주호(2023). 디지털 세계 내 인간 형성 과정으로서의 교육: 슈탈더(F. Stalder)의 디지털성 (Digitalität) 개념의 교육학적 시사점 고찰. 교육철학연구, 45(3). 201-225.
- 조성호(2023.9.22.). “종이책 읽고 손글씨 써라” ... 각국, 디지털 교육에 제동. 조선일보.
- 홍성국(2019). 수축사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 홍성국(2023). 수축사회 2.0: 달린 세계와 생존 게임. 서울: 메디치미디어.